

미혹과 기만으로 정치 권력화하는 동성애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

I. 서론

현재 전 세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26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반면에,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193개국 중 78개 국가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답하였고, 2013년 10월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78.5%가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차별, 인권, 소수자 등의 모호하고 왜곡된 개념을 사용하여 동성애 합법화라는 정치권력을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성애 확산 과정에서 사용된 미혹과 기만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에 의해서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논문을 여러 편 발표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논리에 설득되어,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였던 모든 논문 결과는 번복되었다. 과학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국민들을 미혹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이룬 것이다. 과학적 자료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이 먹히지 않으니까, 인권이란 프레임을 사용해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한다. 차별이란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법을 만든 후에는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조차도 금지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이룬다. 언어유희를 교묘하게 해서 법제화를 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성적지향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삽입하였다.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용 동성애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만들고 학교에서 상영하도록 하고,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내용은 넣고 부정적인 내용들은 넣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10~20대의 50% 이상이 동성애 옹호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제법 노골적으로 퀴어축제에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이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유엔회원국의 약 2/3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없으며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분포를 감추고, 유엔 전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성애 확산되는 대부분의 과정은 교묘한 언어전술, 문화 등의 미혹, 세뇌, 기만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고 한다.

II.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동성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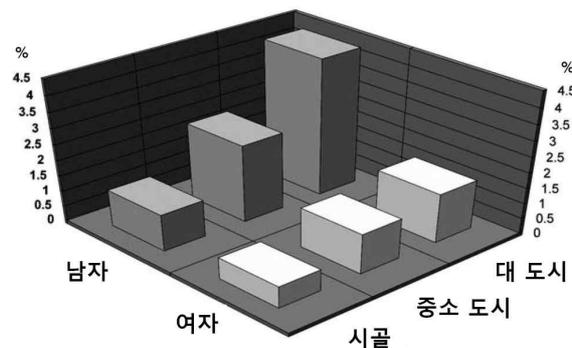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 것이며 동성애자들은 형성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인정과 함께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논문들이 나왔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주장에 휩쓸렸지만, 그 후에 그 결과들이 번복되면서, 이제는 대다수 학자들은 더 이상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으며,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즉, 이제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계 풍토가 되었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겠다.

[1]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될 수 없음.

동성애는 유전이 아닌 근거는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유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그 집단의 성인 한 명당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15%만이 결혼을 한다.¹⁾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기에, 동성애 유전자를 가진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이미 지구상에서 동성애가 사라져야 한다.

[2] 후천적인 영향을 더 받는 동성애

청소년기(14~16세)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²⁾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 따라서 동성애는 자란 환경, 즉 후천적인 영향을 더 받는다.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와 동성애 빈도 비교

1) P. Cameron, T. Landess, and K. Cameron, Homosexual sex as harmful as drug abuse, prostitution or smoking, Psychological Reports 95, 915, 2005.

2) E. O. Laumann, 앞의 단행본.

[3]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음.

- (1) 1993년에 해머는 동성애자 40 가계(family)의 염색체를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 성향이 X 염색체 위의 Xq28이라는 유전자군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했다.³⁾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 (2)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동성애자와 일반인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았기에, Xq28이 남성 동성애 성향과 관련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⁴⁾
- (3)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456명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Xq28 유전자군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⁵⁾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얻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대신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4) 2010년에 라마고파란 등이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없음을 밝혔다.⁶⁾
- (5) 2012년에 드라반트 등은 2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대상으로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연구를 한 결과, X염색체 상에서는 물론 전체 게놈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인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⁷⁾
- (6) 2014년 11월에 베일리 등은 남성 동성애자 409명의 DNA를 분석하여 Xq28과 8번 염색체의 유전자가 동성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 (7) 2018년 10월에 동성애를 한 경험이 없는 사람 45만 명과 한번이라도 동성애 경험이 있는 사람 2만7천여명을 대조해서,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⁸⁾

[4] 동성애자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음.

- (1) 1991년에 리베이(LeVay)는 시상하부의 INAH-3 영역이, 여성이 남성보다 작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아서 여성과 비슷하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 결과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남성 동성애자는 여성과 비슷한 두뇌를 가져서 동성애를 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⁹⁾
→ 2001년에 바인 등은 같은 영역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수가 남녀 차이는 있어도,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는 차이 없다고 발표했다.¹⁰⁾ 즉, 리베이의 결과를 반복시켰다.

3) D. H. Hamer,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1, 1993.

4) G. Rice,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665, 1999.

5) B. S. Mustanski, M. G. DuPree, C. M. Nie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and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72, 2005.

6) Ramagopalan, S. V., D. A. Dymont, L. Handunnetthi, G. P. Rice, and G. C. Ebers (2010).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 131.

7) Drabant E M, Kiefer A K, Eriksson N, Mountain J L, Francke U, Tung J Y, Hinds D A, Do C B,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n a large, web-based cohort".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nual meeting. Nov 6-10, 2012, San Francisco, 2012.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2/0200000000AKR20181022076600009.HTML?from=search>

9) S. LeVay, A difference in hypothalamus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034, 1991.

10) Byne, W.,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2) 1992년에 알렌(Allen) 등은 양쪽 뇌를 연결하는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단면이 여성이 남성보다 크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크다고 발표했다.¹¹⁾
 → 2002년에 라스코(Lasco) 등은 전교련 단면에 대하여 남녀의 차이와 성적지향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¹²⁾

[5]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
 -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자궁 내에서 동일한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기에,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 또는 선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동성애 일치 비율은 높아야 한다.

<표2> 대규모로 수행된 설문조사 요약.

	켄들러 등 ¹³⁾	베일리 등 ¹⁴⁾	랑스트롬 등 ¹⁵⁾
발표년도	2000년	2000년	2010년
조사 대상 국가	미국	호주	스웨덴
조사년도	1995~1996년	1992년	2005~2006년
조사대상자 수	1,512명	3,782명	7,652명
일란성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18.8%	남성 11.1% 여성 13.6%	남성 9.9% 여성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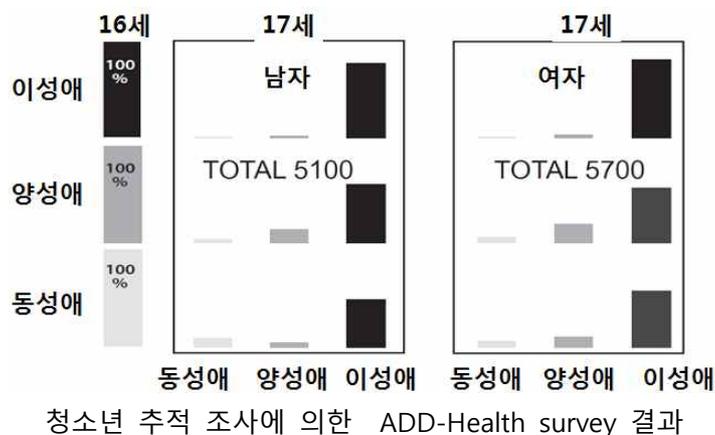
통계학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많을수록 자료의 신뢰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세 번의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 내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동일한 환경으로부터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선천적 및 후천적 영향을 받고, 쌍방에게 자라면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선천적인 요인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미친 영향이 10%도 되지 않음을 잘 나타낸다.

[6] 동성애가 유동적이라는 사실이 유전이 아님을 나타냄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16세에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답한 청소년의 대부분이 1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86. 2001.
 11) L. S. Allen and R. A. Gorski, Sexual orientation and the size of the anterior commissure in the human bra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89, 7199, 1992.
 12) M. S. Lasco, T. J. Jordan, M. A. Edgar, C. K. Petito, and W. Byne, A lack of dimorphism of sex or sexual orientation in the human anterior commissure, *Brain Research* 936, 95, 2002.
 13) Kendler, K. S., L. M. Thornton, S. E. Gilman, and R. C. Kessler (2000).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843-1846.
 14) Bailey, J. M., M. P. Dunne, and N. G. Martin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524.
 15) Langstrom, N., Q. Rahman, E. Carlstrom, P. Lichtenstein (2010).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s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75-80.

년 후인 17세에 이성애자라고 답했다.¹⁶⁾



[7]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

(1) 어릴 때에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례가 1.6~4배 정도 많다는 보고와 함께, 어릴 때의 학대와 동성애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2013년에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등은 동성애는 유발하지 않으면서 학대를 유발하는 가족 특성, 예로서 양부모의 존재, 가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부모의 정신 질환 등을 사용함으로써, 유년 시절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가 동성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⁷⁾

(2) 어릴 때에 가족 단위의 어려움

2013년에 앤더슨 등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어릴 때에 가족 단위의 어려움, 예로서 가족의 정신병, 약물중독, 교도소 수감,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⁸⁾

(3)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하는 부모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에게서 생길 수 있다.

(4)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적체성

정서적 환경, 주변의 시선, 발육 부진, 똥똥함 등 때문에 친구로부터 놀림과 거절을 경험할 때 정상적인 성적체성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5) 잘못된 성경험

기숙사, 교도소, 군대에서 동성애를 우연히 경험하거나 여성의 경우에 성폭행과 같은 잘못된 성경험 때문일 수 있다. 남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남성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오해를 하거나,¹⁹⁾ 동성애를 학습할 수도 있고,²⁰⁾ 남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은 남성

16) Savin-Williams R. C. and G. L. Ream, Pubertal onset and sexual orientation in an adolescent national probability samp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 279-86, 2006.
 17) Roberts, A. L., M. M. Glymour, and K. C. Koenen (2013). Does maltreatment in childhood affect sexual orientation in adulthood? Behaviors of Sexual Behavior 42, 161.
 18) Andersen, J. P., and J. Blosnich (2013). Dispariti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ults: Results from a multi-state probability-based sample. PLoS ONE, 8, e54691.

과의 성관계를 피하려고 한다.²¹⁾

(6) 문화의 영향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 비디오, 동성애 포르노 등의 문화가 주는 호기심과 충동이 동성애가 형성되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7)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죄책감 없이 재미삼아 동성애를 경험하게 만든다.

(8) 반대의 성을 닮은 성격이나 신체적 요소

성격이나 심리적 경향, 반대의 성에 가까운 외모, 목소리, 체형 등의 신체 요소 때문일 수 있다.

여러 요소들이 동성애자가 되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환경이나 요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이 있으며, 동일한 환경이나 요소들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만 동성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이나 요인으로 자신의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동성애자가 되는 기저에는 오히려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동성애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자신의 의지적 선택이 있다.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 색다른 경험을 받아들여 동성애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여 멀어질 수도 있다. 즉, 사람의 행동은 환경이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요인 중에서 자신의 선택이라는 '여과망'을 통과한 것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이성 간의 성관계와 유사한 성적 쾌감을 주므로, 동성애를 경험한 후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동성애 성향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행동을 옮기게 되면 동성애 성향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강화되며, 강한 의존성에 의해 동성애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동성애라는 성적 행동 양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III.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는 동성애

[1] 차별의 법적 의미

- '차별'의 법적 의미 =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차별의 종류
 1. 부당한 차별 =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의 언행
 2. 정당한 차별 =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
- 두 종류의 사유
 1. 가치중립적 사유(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사유) : 정당한 차별이 없음

19) Gartner, R. B. (1999). Sexual victimization of boys by men: Meaning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Gay and Lesbian Psychotherapy*, 3, 1.

20) Cameron, P., and K. Cameron (1996). Do homosexual teachers pose a risk to pupils? *Journal of Psychology*, 130, 603.

21) Marvasti, J. A., and V. Dripchak (2004). The trauma of incest and child sexual abuse: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In J. A. Marvasti (Ed.), *Psychiatric treatment of victims and survivors of sexual trauma*(pp. 3-18).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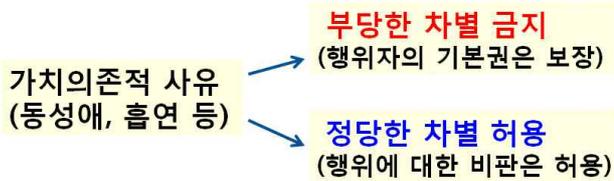
(예) 남녀, 장애, 인종

2. 가치의존적 사유(사회적, 윤리적 논란이 되는 사유) : 정당한 차별이 있음

(예) 동성애, 흡연, 중독

- 동성애 차별은 여성 차별과 흑인 차별과 같지 않음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이유)

○ 행위자와 행위를 혼동하면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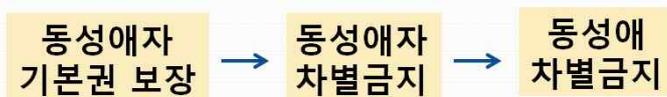


-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담배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함.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함

○ 행위자의 기본권 보장은 그의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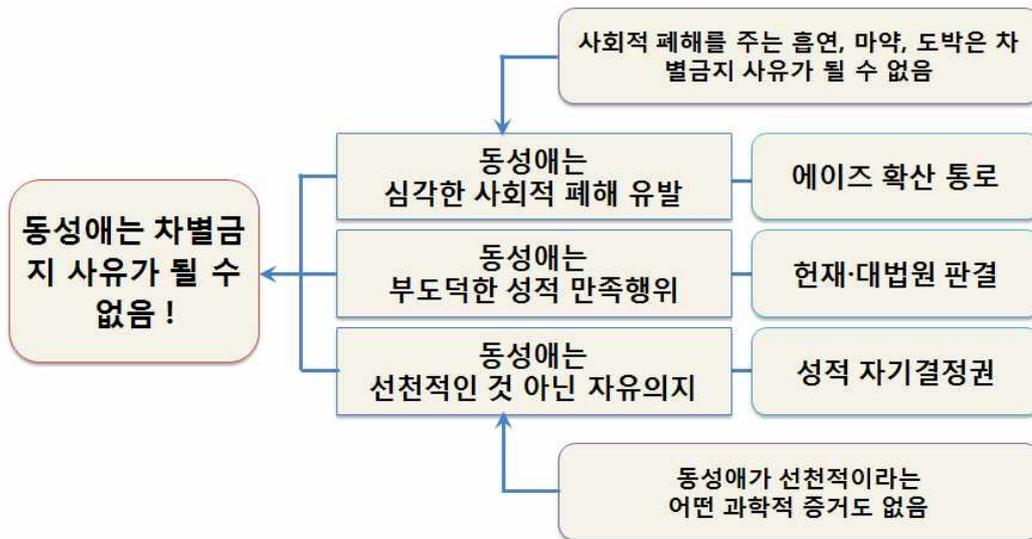
- 기본권 보장이란, 인간으로서의 기본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의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

○ 미혹의 논리 전개



- “동성애자도 기본권 보장을 받아야지” 하고는, 실제 법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를 삽입하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음

[2] 동성애는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고,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이다.' (2008도2222,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3]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음

- 동성애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피해를 주는 동성애 자체는 보호될 수 없음
- 인권은 인간이기에 주어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인권에는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



- 동성애는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이며, 사회적 피해를 주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기에,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 결여된 동성애 자체는 인권이 될 수 없음.

[4] 동성애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님

- 사회적 소수자 =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사회적 관심자 =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회적 피해를 주는 사람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관심자
불가항력적 사유 (장애, 나이, 성별, 피부, 국적 등)	자율적 의지 (성적 자기결정, 기호, 욕망 등)
장애인, 노약자, 탈북자 등	동성애자, 마약자, 도박자
사회적 보호 필요	사회적 피해 유발
반대 행동을 '혐오'라 함	반대 행동을 '비판'이라 함

-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자료가 없기에, 동성애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음
- 흑인, 유대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를 핍박하는 것을 부당한 혐오라고 함.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회적 피해를 주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부당한 혐오가 아니고, 정당한 비판임.

IV. 기만으로 삽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 옹호 조항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질 때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런데 '성적지향'이란 용어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생소하였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또한 차별이란 의미도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으로 포장되었기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만들어낼 법적인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법적 개념 정의 없이 도입하는 것 자체가 성적 지향의 의미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한다. 2001년에 제정된 최초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성적(性的)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정의(定義) 조항은 통상적으로 법률의 초반부에 있는데, 반대를 피하기 위해 법률 중간 후반부 조사대상 조항인 제30조에 들어있다.²²⁾ 이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영향에 대해 기술하겠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²³⁾

22) 통상처럼 법률 초반부 정의조항에 두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주목 받으면 반대가 예상될 수 있어서 최대한 주목을 피하기 위해 숨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조영길, “성적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부당성과 ‘성적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포럼, 2015. 12. 7, 1면).

23) 크리스천투데이, “유승민 의원, 인권교육지원법(안) 자진 철회하라”, 2014.10.31.자.

- (1) 2002년, 사전(辭典)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수정하도록 권고²⁴⁾
- (2) 2003년 3월 3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²⁵⁾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
 - 2004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됨
- (3) 2003년, 인권위가 기획한 인권만화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했음²⁶⁾
- (4) 2003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 강좌를 지원²⁷⁾
- (5) 2004년, 헌혈문진표에서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것을 수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²⁸⁾
- (6) 2004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가 주최한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를 지원²⁹⁾
- (7) 2005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를 채택³⁰⁾

* 2005년 인권위 보고서에 있는 내용

- 1) 동성애 확산 우려하는 신문 기사,³¹⁾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³²⁾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³³⁾ 등을 동성애 차별로 간주
- 2)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³⁴⁾ 교과서 개편,³⁵⁾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³⁶⁾ 있음
 - 2012년,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졌음

- (8)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동성애 옹호하는 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작³⁷⁾
- (9)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 서울지역 1500개 학교에 배포했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도 자료집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바로알기 인권 지침서>를 발간
- (10) 2006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채택³⁸⁾

*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있는 내용

- 1) 군대 내 항문성교(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제6항의 폐지를 권고³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정비
- 2)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지향에

2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2.11.15.자 <https://goo.gl/unE5Bo>

25)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2004. 4. 24. 개정 이전의 법)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 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2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8.12.일자. <https://goo.gl/bu3Xbj>

27) 일다 2006.1.31.자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 강좌 열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7&aid=0000001381>

28) Newsis 2004.8.9.자 "헌혈 前 '동성애' 문진, 평등권 침해"

29) 부산일보 2004.7.12.자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06978>

30) 조여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015.

31) 조여울, 앞의 보고서, 92면.

32) 조여울, 앞의 보고서, 132면.

33) 조여울, 앞의 보고서, 79-81면.

34) 조여울, 앞의 보고서, 27-32면.

35) 조여울, 앞의 보고서, 164-167면.

36) 조여울, 앞의 보고서, 105-127면.

37) 조이뉴스24, 2005.4.12.자 "류승완 감독의 인권영화, 전주영화제서 공개"

3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 <https://goo.gl/w8Czyk>

39) 참세상, 2007.12.14.자 <https://goo.gl/zcXgAM>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3)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 (11) 2006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행사가 인권위 인권단체협력사업 중 하나로 기획됨⁴⁰⁾
- (12) 2006년 7월,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⁴¹⁾
→ 2007년 10월, 법무부가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함
- (13) 2006년, 동성애를 포함하는 2번째 기획만화 출판, 청소년 동성애 내용을 담은 인권영화 <세번째 시선> 제작,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 개최⁴²⁾
- (14) 2006년, 군부대에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권고⁴³⁾
- (15) 2008년,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2'를 제작·개봉함⁴⁴⁾
- (16) 2010년,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⁴⁵⁾
- (17) 2010년, 동성애자인 임태훈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음⁴⁶⁾
- (18)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담긴 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⁴⁷⁾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⁴⁸⁾
- (19) 2012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채택⁴⁹⁾
 - *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있는 내용
 - 1)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규정의 명문화 및 차별환경 개선 노력 (신규)
 - 2)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신규)
 - 3) 교육 및 홍보, 교과내용의 주기적 수정·보완(재권고)
 - 4)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20) 2012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⁵⁰⁾
- (21) 2013년,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영화를 전국 초·중·고 170개 학교에서 상영토록 함⁵¹⁾
- (22) 2014년, 초·중·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동성애 의무교육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 권고⁵²⁾ 및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법안> 제정 권고⁵³⁾
- (23) 2017년,⁵⁴⁾ 2018년 서울,⁵⁵⁾ 2018년 광주 및 대구의⁵⁶⁾ 동성애 축제에 인권위가 참여

40) 일다, 2006.5.24.자 "동성간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라"

41) 연합뉴스, " '약자·소수자 모든 차별 금지' 입법 예고", 2007. 9. 28.자 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6.7.24.자 <https://goo.gl/fCQL2n>

4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6.11.30.자 <https://goo.gl/RThRm9>

4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6.6.28.자 <https://goo.gl/8Xb1VQ>

4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8.4.10.자 <https://goo.gl/fXorpu>

45)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대한 의견 제출", 2010. 12. 8.자 결정문.

46) 경향신문 2010.11.15.자. <https://goo.gl/Mhn8Ho>

47) 국가인권위·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2011. 9. 13.

48) 교회언론회가 방송 및 일간지들을 4년 7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지보도가 급상승함(크리스천투데이, 2014. 8. 14.자 기사).

49) 국가인권위원회 2012.1.3.자 의결. <https://goo.gl/dvxeht>

50) 국가인권위원회 2012.4.12.자 결정문. <https://goo.gl/yR5YTp>

5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3.12.3.자 <https://goo.gl/UYxjt4>

5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4.10.30.자 <https://goo.gl/bCSaZy>

5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4.12.11.자 <https://goo.gl/jDBHnU>

- 동성애에 관하여 차별금지의 소극적 기능을 하던 인권위가 옹호·장려의 적극적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 전환
- (24) 2017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혼인 조항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안 제안⁵⁷⁾
- (25)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초안(의견수렴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의 제2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중의 11절 '성적 소수자'에 있는 제3기(2017~2021) 인권NAP 권고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
- 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차별금지법 제정(신규)
 - 나) 「군형법」 92조의 6(추행) 폐지(재권고)
 - 다) 성적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 추진 체계 및 지원 기반 마련(신규)
 - 라) 성적소수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련 「형사법」규정 개정(재권고)
 - 마)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재권고)
 - 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신규)
- 사)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등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건강보험에서 단계별 보장성 확대(재권고)
- 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익 캠페인 실시(신규)
 - 자) 학교 교육 및 교직원 양성 교육,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재권고)
- (26) 2017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칙을 만들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⁵⁸⁾
- 어릴 때부터 철저히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도록 법과 학칙을 바꾸려고 함
- (27) 동성애옹호 영화상영을 위한 장소 대관을 불허한 송실대에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 옹호하는 불법집회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철회 권고, 기독교인을 직원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송실대 정관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헌법에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보다도 우위에 있는 인권이라고 간주함
- 인권위가 그동안 했던 활동의 상당 부분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54) 한겨레신문 2017.6.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8970.html

55) 한국일보 2018.7.14.자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141631739580>

56) 허프포스트코리아(huffpost) 2018.6.21.자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2b7e0de4b0321a01ce2be6

57)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안 2017.06.26.자 등록.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9&boardid=7601326&menuid=001004001001>

58)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7602411>

-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권고를 해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후, 인권위에서 기획하여 동성애 옹호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만들. 학생, 교직원, 공무원,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게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 교육 실시.
 -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인식을 세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에는 동성애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부스를 만들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제안함.
- 인권위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인권위가 이러한 동성애 옹호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떼땃하게 하는 이유는 인권위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하루 속히 인권위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2]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내용

- 10~20대 젊은이들의 50% 이상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인권위법에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로 말미암아,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즉 비윤리적으로 보는 관점, 에이즈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인 폐해는 전혀 기술할 수 없고, 오직 소수자 인권, 다양성 존중 등으로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임.
 -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꾸어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지금은 다행히 그러한 집필기준이 삭제됨.
-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억울하게 차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동성애를 나쁘게 보면 안 되고,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동성애 옹호 내용들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었음.
-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으려면, 먼저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1) (YBM) 중학교 보건 95p (성과 건강)

<p>3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성 문화</p> <p>성 문화는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족 수, 교육 정도, 사회 활동에의 참여 등 사회적인 구조가 변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u>성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점차 변화해 가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u></p>		
<p>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p>		<p>조선 시대에는 성적 소수자를 엄한 형벌로 다스린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 속에 성적 소수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p>

(2) (비상교육) 고등학교 도덕(생활과 윤리) 81p (성과 사랑의 윤리)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 성적 소수자란 이성애와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 86 사람들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을 지칭하며, '퀴어(queer)' 라고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성적 소수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 87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이에 따라 성적 소수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느 정도 관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 88 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3) (비상교육) 고등학교 사회문화 173p (여러 가지 사회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해결 방안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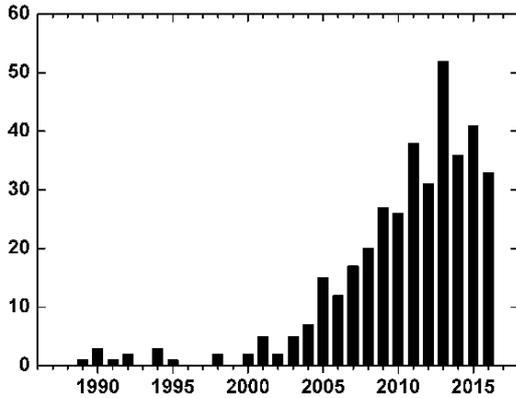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여 공공 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법령이나 제도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누구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언어, 인종, 민족, 신체 조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3]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함

(1) 급증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 실태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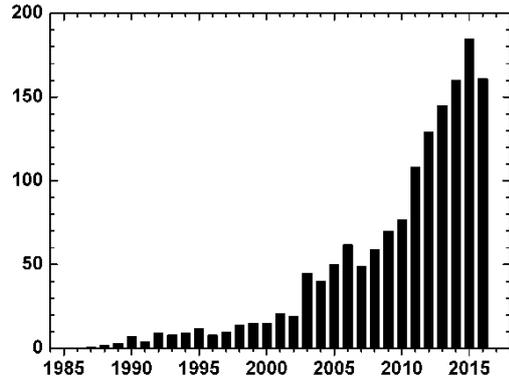
59) 질병관리본부, 「2016년 HIV/AIDS 신고 현황」, 13면.
[표 4] 연도별, 연령별 HIV/AIDS 내국인 신고 현황, 1985~2016 (남자).

① 내국인 15~19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인 수



2000년 2명에서 2016년 33명으로
16년 동안에 대략 16배 증가함.

② 내국인 20~24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인 수.



2000년 15명에서 2016년 161명으로
16년 동안에 약 12배 증가함.

(2) 국내 에이즈와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

①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정부의 자료

1)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326쪽>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학적 특성과 항바이러스 제제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남성동성애자 등과 같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HIV 검사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음

<327쪽>

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성인의 HIV 감염률 자체는 낮지만, 성접촉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HIV/AIDS의 초기 확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2)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9-10쪽>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동성 간의 성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시사하고 있음.

첫째, 성매매 여성 등을 대상으로 HIV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산모들에게 에이즈 검사가 필수 정례검사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에이즈 감염 통계에서 여자는 8.0%밖에 되지 않음. 둘째, 전국의 HIV 감염인들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지역 주요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체감하는 남자 감염인 구성비는 최소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셋째, 보건소 역학조사를 통해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잠정 판단되었던 사례가 추후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②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인하는 전문가들의 발언

1) 방지환 서울시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

“국내 에이즈 역학의 특징으로 성별 분포는 남녀 성비가 11대 1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다.”⁶⁰⁾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 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에이즈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⁶¹⁾

2) 이훈재 인하대 의과대 예방의학 교수⁶²⁾

“신규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전체 감염인 중 남자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0~80%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3)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

① 에이즈는 사망 직전의 진료비 1위

10개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사망 직전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1254만원으로 가장 많았음⁶³⁾

②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 : 한국 1만 명, 미국 120만 명

<참고 자료>

1) 미국은 매년 5만 명이 에이즈에 신규 감염되고, 현재 120만 명이 감염됨

2) 미국 에이즈에 대한 2016년 연방 예산 : 317억 달러(35.8조 원)⁶⁴⁾⁶⁵⁾

에이즈 감염인 1인당 3천만 원임

에이즈 연방 예산 : 2010년 262억 달러 → 2016년 317억 달러(20% 증가)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부담분의 2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함. 결과적으로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불 (90% 의료보험, 5% 질병관리본부, 5%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06년부터 11년간 5,415억원이 들었고, 2016년 한 해에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소모되었음. 한국이 미국처럼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한다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비와 세금도 증가하게 될 것임.

V. 유엔이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한다는 왜곡된 주장

아래의 <표1>에서 보듯이, 195개의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72개국(37%)이며,⁶⁶⁾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64개국(33%)임.⁶⁷⁾ 동성애 처벌법과

60) 방지환,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3. 11, 14면.

61) 국민일보, 국회토론회서도 “에이즈, 주로 男 동성애로 유행”, 2015년 6월 24일자.

62) 이훈재, “국민행복시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3. 11, 44면.

6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5140&code=11132400&cp=nv>

64) 1달러를 1130원이라고 가정

65) fact-sheet-u-s-federal-funding-for-hiv-aids-the-presidents-fy-2016-budget-request.pdf

66) 73 countries where homosexuality is illegal, <https://76crimes.com/76-countries-where-homosexuality-is-illegal/> 73개국 중에서 Cook Islands은 유엔 회원국이 아님.

67) <http://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Culture/Sexuality/Homosexuality/Anti-discrimination-laws>, 65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모두 없는 국가는 61개국(31%)이며, 한국이 여기에 속함. 동성애 처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모두 있는 국가는 2개국임.⁶⁸⁾

<표1> 동성애 처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 명단

동성애 처벌법 있 는 국 가	Afghanistan, Algeria, Antigua & Barbuda, Bangladesh, Barbados, Bhutan, Botswana, Brunei, Burundi, Cameroon, Chad, Comoros, Dominica, Egypt, Eritrea, Eswatini, Ethiopia,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yana, Indonesia, Iran, Iraq, Jamaica, Kenya, Kiribati, Kuwait, Lebanon, Liberia, Libya, Malawi, Malaysia, Maldives,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yanmar, Namibia, Nigeria, Oman, Pakistan, Palestine/Gaza Strip, Papua New Guinea, Qatar, Samoa, Saudi Arabia, Senegal, Sierra Leone, Singapor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ri Lanka, St Kitts & Nevis, St Lucia, St Vincent & the Grenadines, Sudan, Syria, Tanzania, Togo, Tonga, Tunisia, Turkmenistan, Tuvalu,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zbekistan, Yemen, Zambia, Zimbabwe
동성애 차별금 지법이 있 는 국 가	Albania, Andorra, Austria, Belarus, Belgium,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Canada, Cabo Verde, Chile,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cuador, El Salvador,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Guatemala,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auritius, Mexico, Montenegro, Mozambique,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orway, Peru, Poland, Portugal,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erbia, Seychelles,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enezuela
동성애 차별금 지법과 처벌법 이 없 는 국 가	Angol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elize, Benin, Burkina Faso,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ina, Congo, Côte d'Ivoire, Cuba, North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Bissau, Haiti, Holy See, Honduras, India, Japan, Jordan, Kazakhstan,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echtenstein, Madagascar, Mali,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Monaco, Mongolia, Nauru, Niger, Palau, Panama, Paraguay,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Rwanda, San Marino, São Tomé and Príncipe, Suriname,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rkey, Ukraine, Vanuatu, Viet Nam

대략적으로 유엔 회원국 중의 1/3은 동성애 처벌하고, 1/3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고, 1/3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의 수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의 수보다 많음. 이러한 유엔 회원국 분포로 인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한 유엔조약은 전혀 없으며, 유엔조약들을 공정하게 해석하면, 이 개념을 내포하는 조약은 하나도 없음.⁶⁹⁾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도 '성적 지향'이 명문으로 들어 있지 않으며, 차별금지사유로 성(sex)이라고 명시되어 있음.⁷⁰⁾ 국제법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개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유엔의 최고규범인 유엔헌장에서 성에 관한 관습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체계의 영역이라고 인정함.

유엔인권위원회는 1994년 Toonen v. Australia 결정에서 "성"에 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규약 제2조 제1항과 제26조5의 "성"이라는 단어에 "성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각국 중에서 Kosovo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며, 일본과 필리핀은 차별금지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68) 두 국가(Botswana, Mauritius)는 동성애 처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모두 있음
 69)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t the United Nations, Factsheet, 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 2015.11.10.
 7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임.⁷¹⁾ 이러한 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규약 의무 확장은 규약 가입국의 의사와 정면 배치되고, 규약의 비준시 이루어진 1990년 3월 16일 국회 동의를 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제13대 국회 제148회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1990년 3월 8일) 회의록을 보면 국회 동의를 위한 규약 설명에서 정부는 규약이 “남녀평등권을 규정하고”라고 설명했으며, 첨부한 참고자료 중 B 규약 주요내용에도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제2-19조)...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을 뿐 회의록 어디에도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부는 규약상 “성”에 의한 차별 금지를 “남녀평등”으로만 해석하였고, 국회는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규약의 평등권 조항을 동의한 것임.⁷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2009년 5월 제42차 회기에서 채택하여 2009년 7월 2일 배포한 “일반논평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E/C.12/GC/20)에 규약 제2조 제2항의 “기타의 신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20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결의안>(A/RES/64/152)을 찬성 76, 반대 72, 기권 26으로 채택하였음.⁷³⁾ 이러한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의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냄.

유엔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 하였음. 가족보호 결의에 대해 2014년에는 찬성 26, 반대 14, 기권 6이었고, 2015년에 찬성 29, 반대 14, 기권 4이었음.⁷⁴⁾ 본 결의안 채택시 가족의 개념에 LGBTI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를 지켰음. 이로 인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들의 다수는 가족보호 결의에 대해 반대를 하였음.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례, 폭력 행위 금지’를 3번 결의하였는데, 2011년에 찬성 23, 반대 19, 기권 3, 2014년에 찬성 25, 반대 14, 기권 7, 2016년에 찬성 23, 반대 18, 기권 6이었음.⁷⁵⁾ 이렇게 성적지향 차별금지 결의에 찬성이 많은 이유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구성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비율(2011년 38%, 2014 39%, 2016년 36%)이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의 비율(2011년 29%, 2014 26%, 2016년 32%)에 비해 높기 때문임. 동성애 처벌국가에 수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가진 국가의 수에 비해서 유엔 전체 회원국에서 보면 많지만, 유엔인권이사회 내에서는 오히려 적음. 왜곡된 분포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는 유엔 전체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유엔이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없음.

동성애자들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정신에 입각하여 성적지향 차별금지에 동의를 한 국가들도 있었지만,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유를 법제화하였을 때에 동성애 반대 활동이 오히려 처벌받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던 국가들이

71) Paragraph 8.7, Toonen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488/1992, U.N. Doc CCPR/C/50/D/488/1992 (1994).

72) 출처: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73) 일반논평 20 삭제환영 결의안 A/64/PV.65, <https://www.un.org/en/ga/64/resolutions.shtml>

74) Human Rights Council(HRC) resolution - Protection of the family, A/HRC/RES/26/11 (adopted Jun. 26, 2014); HRC resolution - Protection of the family: contribution of the family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its members, particularly through its role in poverty eradication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HRC/29/L.25(adopted Jul. 1, 2015)

75) Human Rights Council(HRC) resolution -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17/19 (adopted Jun. 17, 2011); HRC resolution -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27/32(adopted Sep. 26, 2014); HRC resolution, Thirty-second session. A/HRC/RES/32/2 (adopted by the HRC on Jun, 30, 2016)

점차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경계심을 가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음. 예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결의를 할 때에 중국이 최근에 기권에서 반대로 방향을 선회하였음. 유엔 회원국의 2/3이 현재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관습을 가지고 있음. 그러기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으로 동성애 반대 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오랜 관행과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VI. 결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교묘한 언어전술, 문화 등의 미혹, 세뇌, 기만 등으로 이루어짐이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미혹과 기만 내용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왜곡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는 것, 유엔이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한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기에,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오해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 과학적 자료로 기술하였다.

동성애는 에이즈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선천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이기에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될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주어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인권에는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 결여된 동성애 자체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차별금지'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남녀, 장애 등에 적용을 하면 평등 실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가치 의존적인 사유에 적용하면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야누스적인 '차별금지'의 측면을 숨기고, 차별금지의 순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두 종류의 사유를 함께 나열하여 동일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케 함으로써,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2001년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고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더니 최근에는 대담하게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부스를 만들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제안하고,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헌법에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보다도 우위에 있는 인권이라고 간주한다. 인권위법에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로 말미암아,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내용만을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들의 50% 이상이 동성애 옹호하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10~20대 남성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도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소방국장은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부하직원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⁷⁶⁾ 영국 상담사는 동성

애자 커플에게 성관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해고되었다.⁷⁷⁾ 영국 입양기관은 동성커플에게로의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⁷⁸⁾

영국 과학교사는 11살 학생 질문에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말했다가 해임되었고, 이후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할 수 없도록 무기한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⁷⁹⁾ 영국 체스터 주교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전환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실린 지역신문을 언급한 후, 경찰지구대 조사를 받았다.⁸⁰⁾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증오 범죄라고 판결하고, 손해 배상과 수십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⁸¹⁾ 동성애를 금지하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학칙을 제정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로스쿨 설립 인가를 취소당했다.⁸²⁾ 서구 사례로부터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에 의해 엄청난 역차별이 초래되고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함을 볼 수 있다. 즉,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현실적으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냐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균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라고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지 않고, 대학 총학생회장을 하는 동성애자도 있고, 외식 사업으로 성공을 한 동성애자도 있다. 현행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동성애자도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이 보장된다. 즉,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억울한 차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⁸³⁾에 따르면, 인권위 설립 일인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5년 여 동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다. 이는 성별·임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제기된 전체 차별 진정사건 총 23,407건 중 0.3%에 불과하다. 그나마 44건은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됐고, 18건은 기각됨. 정작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11건에 대해서도 모두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는 수사의뢰나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결정은 단 1건도 없다. 또한 11건의 권고 결정도 인권위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었든지, 혹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5개의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72개국(37%)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64개국

7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26553

77) Christian Concern, 『Current Issues: Gospel freedom, Christian faith and its place in public life』, 2016. 8면.
<http://www.christianconcern.com/cases/gary-mcfarlane>

78)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8면.

79)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22면.

80)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14면.

81)

<http://christiannews.net/2013/02/28/canadian-supreme-court-rules-biblical-speech-opposing-homosexual-behavior-is-a-hate-crime/>.

82)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17141/index.do>

83)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3004&page_size=10&boardtypeid=20&boardid=617177

(33%)이며, 동성애 처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모두 없는 국가는 61개국(31%)이다. 대략적으로 유엔 회원국 중의 1/3은 동성애 처벌하고, 1/3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고, 1/3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의 수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의 수보다 많다. 이러한 유엔 회원국 분포로 인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한 유엔조약은 전혀 없다.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도 '성적 지향'이 명문으로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엔이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혹과 기만으로 전 세계를 휩쓰는 동성애 옹호 바람의 실체를 직시하여서, 조국 대한민국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